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필요성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인 지인의 이름으로 또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이른바 명의 도용·차용 진료가 확산되고 있음. 명의도용·차용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질병정보를 왜곡하여 진료과정에서 개인병력 혼선에 의한 오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차용에 의한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은 향후 피해자의 민영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 수령을 어렵게 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의도용 및 차용 관련 부당진료비의 환수책임을 도용자·대여자와 공유하도록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적포기자 등 국민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이 증가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수진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해 보험급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민출국자, 국적포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 국민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사례는 지난 3년간 46만 건. 149억 원으로 집계됨.
- 그러나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의무를 누락한 채 수진자 자격보유 확인의무만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의 명의 도용 및 차용을 부추길 여지가 있음.
 - 의료기관의 수진자 자격여부 확인에 따른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 수급권자인 지인의 이름으로 또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이른바 명의 도용·차용 진료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 명의도용 진료의 경우 진료비용이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용피해를 자각하기 어려운데, 이를 감안하면 실제 명의도용 진료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더욱이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각 산업에서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산업에서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 없이 진료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기관에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증이나 주민번호를 제시하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보험진료가 가능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는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성명과 주민번호만 불러줘도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며, 의료기관 에는 수진자의 본인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음.
 - 명의도용·차용 진료를 받은 자와 대여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제98조(과 태료). 제10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의거하여 처분을 받게 됨.
 - 명의도용·차용 진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의도용·차용 진료에 연루된 수진자와 대여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은 상당히 미미함.

₩ 국민건강보험 명의도용·차용 진료의 폐해는 다음과 같음.

- 명의도용·차용 진료는 첫째, 피해자의 질병정보를 왜곡하여 진료과정에서 개인병력 혼선에 의한 오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둘째, 명의도용·차용에 의한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은 향후 피해자의 민영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 수령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
- 셋째. 명의도용·차용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을 초래함.
 - 명의도용·차용 진료 관련 부당진료비에 대한 환수율이 지난 3년 동안 약 52%에 불과하고 환수를 위해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넷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진료를 받음으로써 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초래함.

- 구체적으로, 타인의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번호를 도용 및 차용하여 검진을 받은 뒤 진단이 확정되면 본인 명의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민영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 이미 특정 질병보험에 가입한 자가 해당질병에 걸린 지인으로 하여금 가입자 자신의 명의로 진료
 를 받도록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명의도용·차용 진료에 대한 비용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진자 본인확인 뿐 아니라 명의도용·차용이 의심되는 진료의 인지 및 통보가 의료기관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음.¹)
 - 명의도용 진료가 입증되더라도 도용자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의료기관은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09년 11월부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레드플래그 규정(Red Flag Rule)에 따라 수진자 본인확인 절차를 포함하는 명의도용방지프로그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명의도용방지프로그램에 대한 FT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진료접수 시 의료기관은 수진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 함.²⁾
 - 레드플래그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건당 최대 2,500달러에 이르는 민사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외 법률비용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함.
 - 다만 응급화자는 진료접수 시 수진자 본인 여부 확인 대상에서 제외됨
-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한 진료비가 명의도용자에 의한 것일지라도 해당 의료 기관이 진료비를 수령하는 데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영리 추구에만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진자의 명의도용·차용을 방치 또는 묵인할 유인이 있음.
 - 명의도용·차용 진료가 피해자의 질병정보를 왜곡하여 진료과정에서 개인병력 혼선에 의한 오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자발적으로 수진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함.

¹⁾ The World Privacy Forum(2009), "Red Flag and Address Discrepancy Requirements: Suggestions for Health Care Providers".

²⁾ Appendix A to Part 681: Interagency Guidelines on Identity Theft Detec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Federal Register (2007).

- 따라서,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의도용 및 차용 관련 부당진료비의 환수책임을 도용자 · 대여자와 공유하도록 하거나 과태료를 적용하는 등의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수진자의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최초 내원에 한해 신분증 사본을 의료사본에 첨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이 전제되지 않은 채 도용자 및 대여자에 대한 벌칙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더욱이 부당진료비 환수가 어렵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을 통한 명의도용·차용 진료의 사전예방이 중요함.
 -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명의도용 진료의 인지 및 방지 방안과 의료기관 내원 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지참을 홍보할 필요 가 있음. kiqi